

특허괴물 - Flash of Genius?

한윤환*

I. 서론

2001년 펜티엄 칩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 Intel의 변호사 Peter Detkin은 소송의 원고인 Techsearch를 특허괴물로 지칭하며 비판하였는데, 2005년 말에 이르러서는 Intellectual Ventures의 이사 자격으로 Intel 역시 특허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민희, 2009) Intellectual Ventures는 Microsoft의 최고기술책임자였던 Nathan Myhrvold와 Peter Detkin이 “응용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발명자본을 형성하여 더 많은 발명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까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는 가장 위협적인 특허괴물로 인식되고 있다. (Myhrvold, 2010; Hagi *et al.*, 2011)

특허괴물에 대해 Peter Detkin이 처음 정의한 바에 의하면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과거에도 실시한 바가 없고, 현재에도 실시하지 않고, 미래에도 실시할 의지가 없으면서 특허를 통해 거액을 획득하려는 자들”이다. 덧붙여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라, Intel의 대변인이 원고인 Techsearch를 ‘특허 착취꾼 (patent extortionist)’이라고 지칭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Techsearch의 주장에 의하면 “교활한 거대 기업 Intel이 자신들의 특허를 무시하고 철면피 같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반도체를 황금 덩어리로 만드는 마술로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Sandburg, 2001)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이 상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허괴물이라 비판하던 당사자가 스스로 특허괴물이 될 만큼 오늘날 특허괴물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무선통신 관련 특허권자와 그의 변호사가 차린 NTP라는 무명의 회사가 광범위한 소비자들이 무선 이메일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Blackberry의 생산업체 RIM을 상대로 2001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법정 논쟁 끝에 마침내 2006년 1월 미국 대법원이 RIM의 항소를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RIM이 어쩔 수 없이 NTP에게 6억 달러가 넘는 실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Kessler, 2006; Magliocca, 2007)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찬양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비추어보면, 특허침해를 매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창출된 수익이 발명의 새로운 원천에 투자되고 활용되었다면 특허괴물의 등장이 사회의 기술진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만약 정반대로 특허괴물에 의해 창출된 수익이 일단의 특허 전문 변호사들과 투기꾼들에게만 돌아간다면, 정상적인 생산, 판매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던 기업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기술진보가 저해되는 자본주의 엔진의 불순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법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괴물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판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절에서는 특허괴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기원을 문헌사적 관점에서 추적하고, 특허괴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부정적 선입견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어

* 한윤환,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051-663-4455 kindwind@ks.ac.kr

서 특허괴물에 대한 부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특히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가져온 실증연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본다. 또한 특허괴물이 기술혁신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순기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특허를 활용한 또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특허 매집(patent aggregation)’에 대하여 고찰해보며 특허 비즈니스 진화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특허괴물 개념의 기원과 모호성

1. 특허괴물 개념의 기원 - 문헌사적 고찰

비판적, 경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특허괴물과 유사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통한 특허권 행사를 비판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19세기에는 ‘특허상어(patent shark)’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었다. (Magliocca, 2007) 남북 전쟁 이후 서부 개척이 이루어짐과 함께 광활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다양한 농기구들이 제작되면서 농기구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특허상어들은 농기구와 관련하여 행사되지 않던 특허를 매입하여, 특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다수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을 획득하였던 것이다.¹⁾ 특허상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 문제²⁾를 떠올리게 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에도 특허괴물과 유사한 의미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Henkel and Reitzig 2008; Reitzig *et al.* 2007, 2010; Diestre and Rajagopalan, 2012)

본 연구에서 확인한 범위 내에서³⁾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문헌은 1993년의 Forbes 기사이다. (Rutter, 1993) 역설적이게도 이 기사는 촉망받던 벤처 기업가가 Intel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인해 좌절하게 되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비판적으로 해설한 기사로서, 미래에는 일본기업들이 Intel보다 더 적극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허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북유럽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다리 밑의 괴물을 의미하는 ‘Troll’이 특허와 관련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4년 미국에서 특허제도 홍보와 교육을 위해 제작된 비디오를 통해서이다.⁴⁾ 이 비디오의 도입부에서 특허에 대한 무관심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건너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괴물에게 통행료를 징수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Peter Detkin이 이와 같은 과정을 염두에 두고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특허괴물을 정의한 이후 특허괴물은 “느닷없이 나타나 (특허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던) 선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자들”로 인식되었다.⁵⁾⁶⁾

1) Magliocca (2007)는 19세기의 특허상어는 다수의 농기구 최종소비자들을 위협하여 수익을 획득하였으며, NTP 역시 실질적으로는 Blackberry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위협하여 수익을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잠수함 특허는 미국의 특허출원 과정이 과거 ‘계속 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을 인정하여 특허출원 서류를 계속 수정하면서 특허의 공개를 지연시키다가 당해 특허를 실시하는 기업이 등장하면 곧바로 특허를 등록하여 침해 위협을 가하는 행태를 비판하기 위하여 탄생한 용어이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특허출원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잠수함 특허 행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3) Chien (2009, 각주 25)은 1991년에 특허괴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근거가 된 URL 상의 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4) 이 비디오의 디지털 버전은 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youtube.com/watch?v=IOGoZFzHkhs>)

5) Cherry (2004)는 대표적인 특허괴물의 하나로 알려진 Acacia Research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까지 특허권의 매입과 행사를 통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Acacia Research를

2. 특허괴물 개념의 모호성

2001년 Peter Detkin의 주장과 2006년 Blackberry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거치면서, 특허괴물에 대한 초창기의 비판은 특허권을 제품 생산과 판매에 활용하지 않는 “비실시(Not Practicing)”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점진적인 반론 내지 신중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요점은 “비실시 특허권자라고 해서 특허권을 행사하면 안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한 세기 전부터 미국 특허제도의 성공을 대표하는 위대한 발명가로 알려진 Eli Whitney, Thomas Edison, Wright 형제 등도 대부분의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면서 소송 위협에 의한 강제적 특허권 행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McDonough III, 2006; 이충환 2006) 또한 1980년대 중반 위기에 처한 Texas Instrument는 기존 사업을 대부분 정리하고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행사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력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Intel, IBM, Microsoft, Apple 등의 회사들 역시 자신들의 제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특허권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Yang, 2012) 그리고 1980년 제정된 Bay-Dole 법안에 의해 미국의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다수의 미국 대학들이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한 걸음 나아가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실시로 수입을 획득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 이후 논쟁의 양상은 이러한 주체들을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특허괴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며, 부정적 선입견을 완화하여 대안으로 등장한 용어가 “비실시주체(NPEs: Non-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이며 오늘날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PE라는 용어 역시 개인 발명가, 대학, 연구소 및 실시기업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괴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학자와 실무자들은 NPE가 지나치게 완곡한 표현이라고 비판하였다.⁷⁾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특허괴물과 관련하여 “특허 현금화 주체(PMEs: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특허강제주체(PAEs: Patent Assertion Entities)” 등의 여러 용어가 혼재하는 상황이다.⁸⁾ (Yeh, 2013)

용어의 선택과는 별개로 이와 같이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괴물을 비판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국은 U.S. Constitution의 Article One, section 8, clause 8에서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라고 명시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특허 발명을 활용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있으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제품 생산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특허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⁹⁾ (Chien, 2009; McDonough III, 2006)

“특허수익꾼(Patent Profiteer)”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허괴물과 관련하여 최근 논쟁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특허 “私拿捕(Privateering)”의 의미를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 명예훼손 소송에 휩싸인 Intel의 변호인단이 회의를 통해 마땅한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채택된 용어를 제안한 사람에게 경품을 걸었으며, 결국 Intel 변호사 중 한 명의 남편이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를 추천했다고 한다.

7) 특허괴물 이외에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로 “특허해적(patent pirate)”, “특허테러리스트”, “특허공갈꾼(patent blackmailer)” 등이 있다.

8) 미국 의회와 FTC는 “특허강제주체(PAEs)”를 공식적 표현으로 채택하고 있다. (Yeh, 2013)

9) 우리나라의 특허법 역시 제94조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제126조 ①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독점적 배제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강제할 경우, 일련의 순차적 혁신(sequential innovation)을 통해 파괴적 혁신으로 이어지는 혁신 과정에 있어서는 중개적(intermediate) 역할을 하는 혁신의 공개가 기피되어 전체 혁신 과정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수반될 것이다. (Scotchmer, 1991) 결국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특허괴물과 특허정책의 상호작용

“법적으로 유효한 특허는 본 법정이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기술에만 국한되어야 한다.¹⁰⁾”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¹¹⁾”

상기 두 문장은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제헌의회 시절부터 강력한 특허권의 필요성을 인식한 親특허적 입장을 오랜 기간 견지해왔다. 그러나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독점금지(antitrust)가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필수적으로 독점을 수반하는 특허권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여 1970년대까지는 反특허적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한편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막대한 연방재정의 지출과 1970년대 일본의 신흥 경제강국으로의 부상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위기감이 커져갔다. 마침내 1980년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강한 미국(Strong America)’ 재건을 기치로 특허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개혁에 착수한다. (한윤환, 2010)

1980년에는 Bayh-Dole 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에는 특허소송의 2심 법원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이 설립된다. CAFC는 설립 이후 특허권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통해 ‘특허권자 친화적(patentee friendly)’ 법원으로 알려지게 된다.

1980년대에는 <표 1>에 요약한 바와 같이 일련의 판결과 특허심사를 통해 미생물, 동물, 수학 공식과 SW 등으로 특허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1998년 판결을 통해서는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까지 특허권 획득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2002년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아 ‘특허 표시(patent marking)’가 존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비실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예고하게 된다.¹²⁾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특허권 강화를 위한 親특허적 경향은 2001년 Peter Detkin이 특허 괴물을 언급한 후 2006년의 Blackberry 사건을 즈음하여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2005년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용되던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침해명령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2007년에는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하는 피고의 특허무효 청구에 있어서 ‘진보성(non-obviousness)’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특허무효의 가능성을 확대하였고, 특허침해의 가중처벌 요건인 ‘고의적(willful)’ 침해 기준 역시 강화하였다. 나아가 2008년에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특허가 제품에 기여한 비율에 국한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2010년에는 영업방법의 특허성 기준을 강화하였다.

미국 의회에서도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어 2011년 America Invents Act가 제정되고 2013년 3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영업방법의 특허성 기준을 소폭 강화한 것 이외에는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이견으로 인해 애초의 입법 취지는 대폭 완화되었다.¹³⁾ 또한 2013년 12월에는 SHIELD (Saving High-Tech

10)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Jungerson 대 Ostby and Barton Co. 사건 판례에서 인용.

11)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Diamond 대 Chakrabarty 사건 판례에서 인용.

12) 이 판결은 특허권의 존재에 대한 검색과 확인의 의무를 잠재적 침해자(alluded infringer)에게 부과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을 통한 공개(disclosure)만으로 고지(notice)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¹⁴⁾

<표 1> 미국 특허정책의 시대적 변천 과정 : 요약 연표

시기 구분	연도	내용	
反특허 시기 Anti-Patent Era	1929	경제대공황 시작	
	1952	특허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오늘날 특허법의 기본체계 정비 - 특허요건으로 신규성과 비자명성 명시	
	1975	특허청을 특허상표청으로 변경	
親특허 시기 Pro-Patent Era	1980	Bayh-Dole Act -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Diamond 대 Chakravarty 사건 대법원 판결 - 미생물에 대한 특허성 인정	
	1981	Diamond 대 Diehr 사건 대법원 판결 - 자연법칙, 수학적 공식의 적용에 대한 특허성 인정 ↳ 소프트웨어 특허성 인정	
	1982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 - 특허소송의 2심을 전담: 특허권자 승소 판례 증가	
	1988	Harvard Onco-Mouse에 대한 특허권 등록 - 동물에 대한 특허성 인정 AT&T Karmarkar Algorithm에 대한 특허권 등록	
	1994	TRIPs 협정 - 미국 특허보호 기간을 발명 후 20년으로 연장	
	1998	대법원 판결(SSB v. Signature Financial Group) - 영업방법을 특허성 인정	
	2002	Texas Digital Systems 대 Telegenix Inc 사건 대법원 판결 - 특허 표시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조정기 Middle Inning	2005	eBay 대 MercExchange 사건 대법원 판결 - 침해금지 청구 인용 요건 강화
		2006	NTP 대 RIM 사건
2007		KSR International 대 Teleflex Inc 사건 대법원 판결 - 특허 무효 판단에 있어서 진보성 기준 강화 MedImmune 대 Genetech Inc 사건 대법원 판결 - 실시권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 가능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사건 CAFC 판결 - 고의침해 입증 기준 강화	
2009		Lucent Technologies Inc 대 Gateway Inc 사건 CAFC 판결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	
2010		Bilski & Warsaw 대 Kappos 사건 대법원 판결 - 영업방법 특허성 기준 강화	
2011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 先발명자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채택 (先출원주의와 先발명주의의 절충안) - 특허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도입	
2013		SHIELD Act 미국 하원 통과 - 특허침해 소송 관련 제반 조항 변경 - 소송비용 패소한 측에서 부담 등	

(註) 참고문헌 상의 문헌들에 포함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음.

13) 개정 내용 중 특허괴물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은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과정에서 ex partes 방식을 inter partes 방식으로 변경한 점이다. Ex partes 방식에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재심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반해, Inter partes 방식에서는 제3자의 재심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한다.

14) 이 법을 통해 비실시 특허권자 소송의 경우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특허괴물의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특허괴물 출현의 이면에는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親특허적 판결과 입법이 자리하고 있으며, 약 20여년간 이어져 오던 정책 기조가 2000년대 중반부터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의 反특허적 경향은 공격적 특허권 행사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기업들은 교차실시(cross-license) 등의 화해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영화 Flash of Genius로 널리 알려진 Robert Kearns의 차량용 ‘속도 조절 와이퍼’ 발명 사례와 같이 개인 발명가들 역시 특허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

1980년대 이후 특허권 강화의 움직임에 가장 먼저 대처한 주체는 Texas Instrument로 대표되는 거대기업들이었다. 또한 강력한 특허제도는 독점 기업의 특허 선점(preemption)을 통해 독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Tirole, 1988) 따라서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특허괴물은 더이상 특허권 강화의 열매를 독점할 수 없는 거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인지도 모른다.¹⁵⁾

III. 특허괴물 논쟁의 주요 내용

1. 부정론

1) 저질특허와 악의적 소송 전술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 확산되면서, 특허괴물에 대한 비판은 특허괴물이 행사하는 특허권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과 특허괴물이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1) 저질 특허의 행사

먼저 특허괴물이 보유하는 특허는 청구범위가 모호(fuzzy)하며, 복합적 시스템 기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주변기술(marginal invention)이거나, 무효로 판정될 확률이 높거나 유효하다고 판정되어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할 확률이 희박한 허약한(weak) 특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나아가 특허괴물은 첨단 ICT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상호 관련된 수많은 특허가 존재하는 ‘특허 덩불(patent thicket)’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로열티 축적(royalty stacking)’ 문제를 심화시켜 사회적 사중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Lemley and Shapiro, 2007; Shapiro, 2001)

그러나 특허괴물이 행사하는 특허의 품질이 낮다는 충분한 실증적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Shrestha (2010), 조영주 (2013) 등의 연구에 의하면 특허괴물이 행사하는 특허의 품질이 실시기업이 행사하는 특허의 품질보다 우월하면 우월하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나아가 특허괴물이 개인발명가들의 특허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개인발명가는 최소 25,000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며 특허를 출원하는데, 개인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므로 강력한 특허일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다.

또한, 특허덩불이나 로열티 축적의 문제는 특허 소유권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이지 특허괴물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즉 특허괴물로 인해 특허의 절대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더 많은 특허가 행사된다는 것이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역설적으로 IBM, Microsoft, Apple 등의

15) Peter Detkin의 특허괴물 주장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Intel과 Techsearch 간의 특허분쟁에서 Intel의 사악한 행태가 감추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Niro, 2013)

거대기업들이 엄청난 수의 상호관련된 특허를 경쟁적으로 확보하여 왔고, 특허괴물이 특허권을 행사함으로써 특허덤불이 심화된다면 거대기업들 역시 특허덤불을 심화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비판은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하겠다.

(2) 악의적 소송 전술의 활용

특허괴물은 고소할 대상인 실시기업의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매복(ambush)’을 활용하며, 애당초 최종 판결까지 끌고갈 의지가 없으면서 다만 미국 특허소송의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기업을 피고로 고소한 후 특허소송비용 이하의 소액 합의금을 받아내고 현금을 획득하는 ‘성가신 소송(nuisance suits)’을 활용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피고소 기업의 협상력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변복불가능한(irreversible)’ 투자가 이루어져 피고소 기업이 ‘속박(holdup)’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속박 전술은 기존의 실시기업들도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나아가 특허괴물 비판의 선두에 서있는 거대 ICT 기업들은 충분한 법률적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선행기술 검색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 속박 상황을 우회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검색 의무에 대한 방어가 용이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므로,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기업들을 성가시게 하여 다수로부터 소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술은 미국의 사법체계가 갖는 고유의 문제이지 특허괴물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은 SHIELD 법안 등을 통해 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복수의 피고를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 심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해나가고 있다.

2) Bessen과 Muerer의 실증적 비판

이제까지 살펴본 특허괴물에 대한 비판은 현상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히 다양한 반론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Boston 대학 교수이자 연구원이 Bessen과 Muerer는 특허괴물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증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논쟁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들의 두 가지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직접비용

Bessen and Muerer (2014)는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괴물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 실시료 및 합의금 등을 포함한 특허침해 소송의 ‘직접’ 비용을 추정하여, 2011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직접 비용 부담 액수가 290억 달러 이상이며 이중 23%는 법정 비용으로 명백한 사중손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특허괴물을 옹호하는 일련의 주장들이 실증분석을 통해 뒷받침된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괴물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주장하였다.

첫째, 직접 비용 분포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소수의 초고비용 소송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소송 중 59%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매출액 대비 직접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법정까지 가지 않은 특허권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괴물의 주요 공격 대상이 대기업이라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둘째, 피해 기업들이 부담한 총비용 중 5% 정도만이 발명가에게 귀속되었으며, 특허괴물이 벌어들인 실시료와 합의금의 7% 정도만이 발명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피해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집약적인 기업들로서 혁신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특허괴물에게 돌아감으로써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Bessen and Muerer (2014)의 연구는 그들 자신의 주장대로 특허소송과 소송을 암시하는 특허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Schwartz and Kesan, 2014; Summerfiled, 2012)

첫째, 설문 모집단 자체가 특허소송 비용이 큰 기업들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한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특허소송 비용이 큰 기업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설문조사 대상 기업을 RPX의 D/B에서 추출하였는데 RPX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비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설문 모집단의 RPX 고객 기업이라면 마땅히 특허소송에 많이 휘말리는 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RPX 고객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RPX의 잠재 고객으로 해석하여 역시나 특허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이들의 특허소송 비용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Bessen and Muerer (2014)가 추정된 총비용 290억 달러 중 그들이 주장하는 77%는 비용이 아니라 특허제도가 마땅히 보상해줘야 할 ‘이전(transfer)’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특허를 침해한 자는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즉 Bassen and Muerer (2014)의 주장처럼 290억 달러 전부가 비용이 되려면 “특허소송 자체와 행사되는 특허권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아가 23%의 법정 비용 역시 특허제도의 목적과 특허소송의 긍정적 역할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형사 범죄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분명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 비용 때문에 형사법 체제를 없애자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법정 비용은 “발명가를 보상하고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더 많은 특허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Bessen and Muerer (2014)가 분석한 중소기업들은 특허침해 소송의 피고가 된 기업들이다. 특허소송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유효한 특허가 침해당한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의 원고로서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Bessen and Muerer (2014)는 특허괴물들이 실시료와 합의금으로 벌어들인 돈의 7% 정도만이 발명가에게 귀속되어 혁신 유인의 제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가에게 귀속되는 7%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명백히 발명가가 전혀 못 받는 것보다는 혁신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특허괴물의 사적, 사회적 비용

Bessen *et al.* (2011-2012)은 특허괴물이 제기한 특허소송이 피고기업들의 주가에 미친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비용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특허괴물과의 소송에 휘말린 피고기업들의 주식가치의 상실 규모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은 매년 평균 830억 달러 이상의 부가 상실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산업 R&D 투자 총액의 1/4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부의 손실 중에서 특허괴물들에게 이전되는 부분, 피고기업의 경쟁기업에게 이전되는 부분 및 변호사들에게 이전되는 부분을 종합해볼 때, 피고기업들이 입은 사적 부의 손실의 대부분은 사회적 사중손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들에게 이전되는 부가 궁극적으로 독립 발명가들에게 이전되어 혁신 유인으로 제공

된다면 동태적 사회후생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피고기업들의 부의 손실 중 독립 발명가에게 전이되는 비율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식으로 독립 발명가에게 제공되는 혁신 유인은 잘못된 유인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독립 발명가들의 연구개발 방향을 창조적(disruptive) 기술이 아닌 이미 정립된 주류 기술의 아류 기술 개발로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의 위협 때문에 피고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된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혁신 유인의 감소를 의미하며, 나아가 이들의 혁신 유인이 감소하면 독립 발명가들의 잠재적 라이선스 수요자도 감소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독립 발명가의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진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essen *et al.* (2011-2012)은 특허피물 소송의 수혜자는 소수의 변호사와 특허피물 회사에 투자한 소수의 투기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Bessen *et al.* (2011-2012) 이 채택한 사건연구 방법은 학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방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Schwartz and Kesan, 2014) 또한 단기적 주가 변동이 직접적 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2. 긍정론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피물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의 발명을 통한 수익창출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특허피물이 효율적인 ‘특허시장(market for patents)’의 작동을 원활히 한다는 긍정론도 제시되고 있다

1)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 지원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신생기업은 특허를 취득하였다는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수익을 실현할 수 없으며, 직접 제품을 개발하여 상업화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함으로써 실시료의 형태로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의 상업화에는 막대한 자본이 뒷받침되는 보완적 자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Teece, 1986) 또한 제3자에게 실시권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이들은 열악한 협상력을 갖게 되어 충분한 실시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허피물은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 소송 위협(credible litigation threat)’을 바탕으로 더 유리한 실시료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를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신생기업에게 이전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신생기업은 ‘발명’ 과정에 전문화하고 특허피물이 시장 교섭을 대행해줌으로써 혁신 과정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피물은 발명의 거래에 수반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줌으로써 혁신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신생기업이 실현한 발명의 가치는 다양하게 분포되므로, 잠재적 발명 구매자는 가치가 낮은 발명을 구입할 가능성으로 인해 거래에 소극적이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높은 가치를 가진 발명을 성취한 특허권자는 그 가격으로는 거래에 응하지 않아 시장 자체의 성립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허피물이 특허 가치 평가의 전문가로 활동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hrestha, 2010)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관점도 특허 거래시장에서 특허피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특허피물은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발명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이전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획득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특허피물이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이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던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미 공적 영역에서 사회가 공짜로 활용하던 기술에 대하여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사후적 사중손실로 이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 특허시장의 활성화

특허피물이 특허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시장 청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특허시장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McDonough, 2006) 이는 특허피물이 특허권자로 하여금 직접 실시와 실시권 허용 이외의 제3의 선택권으로, 특허피물에게 특허를 매각함으로써 특허를 현금화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특허의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특허피물이 특허시장을 ‘탐색(search)’ 시장에서 주식시장과 같은 시장으로 변화시키는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잠재적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없이도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으며, 특허피물은 반복되는 거래 경험을 통해 특정 발명에 대해 적합한 시장 청산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특허피물이 주식시장의 딜러와 투자분석가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명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이다.

한 걸음 나아가, 특허피물이 발명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과거 벤처자본 모델이 신생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하였듯이 발명에 대한 사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발명을 유도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Myhrvold, 2010)

그러나 이러한 논리 역시 발명시장에서 특허피물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IV. 결론

특허제도 자체가 발명가에 대한 ‘과소보상(under compensation)’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 ICT 산업을 중심으로 ‘속박’과 ‘로열티 축적’을 활용하는 특허권자가 과도한 보상을 획득한다는 주장은 색다르게 다가온다. 그 외중에서 특허권을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해 직접 활용하지 않고 단지 침해 소송과 위협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특허피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했다는 주장이 주류 언론과 일부 학계에서 설득력을 얻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과연 특허피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특허피물을 바라보는 긍정론과 부정론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특허피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일반에게 회자되어 왔으며, 특허피물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특허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판결과 입법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특허피물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입장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현실에서 특허피물에 해당하는 실체적 주체는 정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과거 백열전구와 전기, 철도 등의 기술혁신에 수반되어 나타났던 특허권의 적극적 행사가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특허피물은 실체적 주체가 아니라 세기 말에서 세기 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과정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일화(episode)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특허피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것이야말로 ‘천재성의 발현(Flash of Genius)’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기술 상업화(commercialization)가 보완적 자산의 추구 뿐만 아니라 (Teece, 1986) ‘보완적 특허’의 획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그러한 보완적 특허 획득 과정을 지원하는 경제 주체의 활동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미국의 親특허정책이 자리하고 있으며 거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최근 특허괴물에 대한 비난의 중심에는 거대 ICT 기업들이 서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어쩌면 1980년대에 누군가가 오늘날 특허괴물이 행사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하지 않았음에 안도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아가 ICT 산업을 중심으로 Intellectual Ventures 등의 ‘특허매집기업(patent aggregators)’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Intellectual Ventures는 사상 유례가 없는 특이한 기업 구조를 가졌으며, 이러한 기업 구조야말로 Intellectual Ventures의 발명품이라 할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Smith, 2012) 특허괴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던 특허매집기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할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거대기업이 특허권 자회사 또는 shell company를 설립하거나 특허괴물과 연합하여 다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 ‘私拿捕(privateering)’에 대한 우려는 주목할 만하다. 거대기업이 직접적 비용이나 이미지(reputation) 상의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뒤에 숨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종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면, 자칫 실체 없는 특허괴물이 아니라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특허공룡이 등장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¹⁶⁾ (Golden, 2013)

참고문헌

- 김민희 (2009), “미국에서의 “Patent Troll” 관련 최근 쟁점과 판결 : Pro-Innovation 위협 or Invention Capitalism 촉진,” 「지식재산21」 1월, 14-40.
- 이충환 역 (2006), 「빛의 제국: 에디슨,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전류전쟁」 양문출판사.
- 조영주 (2013), “제조업체와 비실시특허권자의 특허가치 비교: ITC 소송특허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40, 1-53.
- 한윤환 (2010), “특허권 강화의 이론과 현실: 미시경제학적 접근,” 「경제경영연구」 5 (1), 1-19.
- Bessen, J. and M. J. Muerer (2014),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 *Cornell Law Review*, Vol. 99, 387-424.
- Bessen, J., J. Ford, M. and J. Muerer (2011-2012), “The Private & Social Costs of Patent Trolls,” *Regulation*, 26-35, Winter.
- Cherry, Steven M. (2004), “Patent Profiteers,” *IEEE Spectrum*, 38-43, June.
- Chien, C. (2009), “Of Trolls, Davids, Goliaths, and Kings: Narratives and Evidence in the Litigation of High-Tech Patents,” *North Carolina Law Review* 87, 1571-1615.
- Cukier, K. (2005), “A Market for Ideas,” *The Economist*, Oct. 22.
- Diestre L and Rajagopalan N. (2012), “Are All ‘Sharks’ Dangerous? New Biotechnology Ventures and Partner Selection in R&D Allian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 1115-1134.
- Golden, John M. (2013), “Patent Privateers: Private Enforcement’s Historical Survivor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26, 545-618, Spring.
- Hagi, A., D. B. Yoffie, A. Wagonfeld (2011), “Intellectual Ventures,”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o.* 710-423.
- Henkel, J. and M., Reitzig (2008), “Patent Sharks,”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129-133.

16) 미국 Intellectual Ventures의 본사 현관에는 실제 크기의 공룡 티라노사우르스의 머리 모형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Cuckier, 2005)

- Kessler, M. (2006), "High Court Refuses to Hear BlackBerry Maker Case," *USA Today*, Jan. 23.
- Lemley M. A. and C. Shapiro (2007),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85, 1991-2049.
- Magliocca, G. N. (2007), "Blaceberries and Barnyards: Patent Trolls and the Perils of Innovation," *Notre Dame Law Review* 82 (5), 1809-1838.
- McDonough III, J. F. (2006), "The Myth of the Patent Troll: An Alternative View of the Function of Patent Dealers in an Idea Economy," *Emory Law Journal* 56 (1), 189-228.
- Myhrvold, N. (2010), "Funding Eureka," *Harvard Business Review*, 40-50, March.
- Niro, R. (2013), "Why Bash Individual Inventor-Owned or Controlled Companies," *IPWatchDog*, June.
- Reitzig, M., J. Henkel and C. Heath (2007), "On Sharks, Trolls, and Their Patent Prey—Unrealistic Damage Awards and Firms' Strategies of Being Infringed," *Research Policy* 36, 134-154.
- Reitzig, M, J. Henkel and F. Schneidery (2010), "Collateral Damage for R&D Manufacturers: How Patent Sharks Operate in Markets for Technolog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9 (3), 947-967
- Rutter, N. (1993), "The Great Patent Plague," *Forbes*, 59-66, March.
- Sandburg, B. (2001), "You May Not Have a Choice. Trolling for Dollars," *The Recorder*, July 30.
- Schwartz, D. L. and J. P. Kesan (2014), "Analyzing The Role of Non-Practicing Entities in the Patent System," *Cornell Law Review* 99, 425-456.
- Scotchmer, S. (1991),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Cumulative Research and the Patent Law."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1, pp. 29-41.
- Shapiro, C. (2001),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licenses, Patent Pools, and Standard-Setting." In A. Jaffe, J. Lerner, and S. Stern (eds),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1, MIT Press.
- Shrestha, S. (2010), "Trolls or Market-Makers? An Empirical Analysis of Nonpracticing Entities," *Columbia Law Review* 110, 114-160.
- Smith, G. (2012), "Why Tech Vendors Fund Patent 'Trolls'," *ComputerWorld*, April 5.
- Summerfield, M. (2012), "A \$29 Billion Us Troll-Tax or Just Another Statistical Smokescreen?," *Patentology Blog*, June 29.
- Teece D. (1986), "Profi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Collaboration, Licensing and Public Policy," *Research Policy* 15 (6), 285-305.
- Tirole, J. (1988),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MIT Press.
- Yang, D. (2012), "Patent Trolls: Legit Enforcers or Harrasser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17, 573-577, November.
- Yeh, B. (2013), "An Overview of the "Patent Troll" Debat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16.